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1. 건축기획과-23693('18.11.27) 관련 내용입니다.
2. 질의요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과 관련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동 호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건축정책과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107 (2019.02.20.) 접수 건축기획과-3110 (2019.2.22.)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3 /전송 044-201-5574 / eonjin01@molit.go.kr / 대시민공개